

민원종류

일반민원

제목

세종 남부 경찰서 황석민 경감 고소한다

내용

고소인: 김명호

피의자: 황석민, 세종 남부 경찰서 경감

제목: [형법] 제123조의2(법왜곡)

피의자 황석민은, [형법] 제123조의2(법왜곡) 제1호 위반 범죄를 최소한 2차례 저질렀다

1. 고소를 진정으로 처리할 수 있는 조건 규정한 [경찰 수사규칙] 제21조 제2항 그 어느 호에도 해당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, 이송받은 대전지검 2026형제12434 고소사건을 진정으로 종결(첨부 자료), 검찰에 보고조차 하지 않음으로써, "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함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여 의도적으로 수사의 결과에 영향"을 미쳤고

2. [대법원 1995. 11. 10. 선고 95도1395 판결] 허위공문서작성죄는 허위공문서를 작성함에 있어 그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인식하면 성립하고, 허위공문서 작성 그 자체로서 문서에 대한 공공적 신용을 위태롭게 하여 처벌하는 것이므로 특정인에 대한 구체적인 손해가 생기거나 생길 위험이 있을 것을 요하지 않는다.

에 명시되었듯이, 공문서 내용이 허위라는 것 자체만으로 성립함에도 불구하고

"사무를 그르치게 할 목적이 아니라는 돌대가리 개소리"로 허위공문서 작성죄 적용하지 않음으로써, 적용되어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여 의도적으로 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.

이런 돌대가리가 경감이랍시고 수사한다니, 당장 해고해야 한다. 엄벌에 처하라

자세한 것 ⇒ <https://seokgung.com/eunpyung10/corrupt9x.htm#04022026>

첨부 파일

0522dhkim.pdf

처리기관 정보

처리기관 대검찰청 (대검찰청 반부패부 반부패1과)
처리기관 접수번호 2AA-2605-1119282
접수일 2026-05-26 11:20:34
담당자(연락처) ()
처리예정일 2026-10-02 23:59:59

※ 민원처리기간은 최종 민원 처리기관의 접수일로부터 보통 7일 또는 14 일입니다. (해당 민원을 처리하는 소관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)